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08
----------	------

2025년 4월 2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3. 28. 박석 의원(20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5. 4. 2.

다.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5년 4월 24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의 위상을 강화하고 권위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표창 제도 운영의 규범력 강화하고자 함.
- 표창 추천 건수 상한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원 간 형평성 확보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표창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정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이 추천하는 표창 추천 건수의 상한 기준을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1조제4항).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표창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정함(안 제15조).
- 공적조서 서식 내 추천 훈격 항목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 개정함(별지 제4호서식).
- 대리인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위임장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4. 5.(토) ~ 2025. 4. 9.(수)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제도 중 의원이 추천하는 표창 추천 건수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이를 당연 취소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음.

2 표창 추천 건수 상한제도 도입(안 제11조제4항)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¹⁾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표창권자로 하여 표창장·감사장·상장의 3종류 표창을 의원 및 의회사무처 담당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수여함.
 - ※ 서울특별시의회의 표창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됨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수여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여 연간 6,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24년 말 기준 의원 추천 시민 표창은 '24년도 전체 표창 수여 건수 중 87.3%를 차지하고 있음.

1) 지방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임.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운영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의원 간 형평성과 의장 표창 권위 제고 등을 위해 의원 1인당 4년 임기 내 200건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의원 1인당 의원별 표창 추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의 위상을 강화하고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11조제4항 신설으로 의원 임기 중 추천 건수 상한을 의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음.
 - 한편, 11대 의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기시작 후 2년 8개월 간 의원 1인 당 평균 106건이 수여되고 있어 이들 운영 현황을 기초로 전체 의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범위의 추천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u>

3 표창 취소 사유 발생 시 당연 취소화(안 제15조제1항)

- 개정안 제15조는 기존에 공적이 허위·거짓인 경우 및 표창 제외 대상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등 표창 취소 사유가 있는 때에 그 취소를 재량으로 두고 있어,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당연 취소하고자 함.

<개정안 제1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 ----- <u>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u> 해당될 때에는 표창을 취소하며, 제3호에 -----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현행 제15조제1항제1호)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현행 제15조제1항제2호) 등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표창권자가 취소하도록 하고,
- 제3호의 표창 수여 사실로 영리를 취하는 등 의의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3.7.24.)에도 부합하는 조치임.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이 허위·거짓인 경우 등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당연 취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의 포상 취소 규정에 대해 미흡 판단을 한 바 있음.

- 표창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재량규정으로 운영되어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이에 대응하게 되는 것을 보완하고, 표창 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잘못된 수여를 즉시 보완하여 표창 적격성과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4 별지 서식의 현행화(안 별지 제4호 개정 및 제8호 신설)

- 그 밖에, 개정안은 별지 서식 중 추천훈격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오기 하고 있던 것을 개정하고(안 별지 제4호), 표창수여자에 대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대리인이 발급하려는 경우 첨부하기 위한 위임장 서식을 신설하였음(안 별지 제8호 신설).
- 다만, 별지 제8호가 조례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와 제17조(기록의 보존·관리)에 따른 사실확인서 대리 수령에 필요한 위임장 서식을 규정 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수령 절차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별지만을 신설하고 있어 본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5 종합검토

-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추천권자인 의원에 대한 추천 상한을 규정하고, 표창 취소 사유 발생 시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를 도용한 위조 표창장이 발견되고²⁾ 공공기관 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 남용³⁾ 등 표창제도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음.

2) 뉴시스,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 도용 위조 표창장 발견…수사 의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6_0003055025> (2025.2.6., 9:50)

3) 한겨레신문, “대구시장 1년에 표창장 2200장 남발…관리도 엉망”,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08603.html>> (2019.9.15., 16:56); 이투데이,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4418>> (2024.10.30., 9:50).

- 이러한 가운데, 본 개정안은 표창 추천권자인 의원에 대한 추천 상한을 규정하고, 표창 취소 사유 발생 시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의 위상 저하를 예방하고 영예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의 완결성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지 서식 신설과 관련된 본문 규정의 보완과 해당 별지 제8호서식 중 위임에 관한 내용에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함.

<조례안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생략) <신설>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 -----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표창을 취소하며, 제3호에 ----- ----- 한다.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③ (생략)

<신 설>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표창수여 사실확
인서는 별지 제8호서
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illegible]

[참고] 별지 제8호서식 수정의견

※ 위임장 중 위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함

개정안	수정의견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table><tr><td rowspan="2">위임하는 사람</td><td>이름</td><td>생년월일</td></tr><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table>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받을 것을 위임합니다. <table><tr><td rowspan="3">위임받는 사람</td><td>이름</td><td>생년월일</td></tr><tr><td>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td><td>전화번호</td></tr><tr><td>주소</td><td></td></tr></table>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울특별시의회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감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91조와 제29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복상지 80g/㎡]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table><tr><td rowspan="2">위임하는 사람</td><td>이름</td><td>생년월일</td></tr><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table>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table><tr><td rowspan="3">위임받는 사람</td><td>이름</td><td>생년월일</td></tr><tr><td>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td><td>전화번호</td></tr><tr><td>주소</td><td></td></tr></table>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울특별시의회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감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91조와 제29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복상지 80g/㎡]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담당 연락처

02-2180-7688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위임장 양식을 신설하면서 해당 별지 제8호서식의 활용에 관련된 본문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별지 제8호서식 내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수정된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양식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별지 제8호서식을 소지한 자에 대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제16조제4항 신설).
- 별지 제8호서식 중 위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안 별지 제8호서식).

8.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찬성 10명)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8
----------	------------

제안년월일 : 2025년 4월 24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임장 양식을 신설하면서 해당 별지 제8호서식의 활용에 관련된 본문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별지 제8호서식 내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수정된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양식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8호서식을 소지한 자에 대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제16조제4항 신설)
- 별지 제8호서식 중 위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안 별지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안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회장 귀하

유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생략)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 ----- <u>다음 각 호</u> <u>중 제1호 및 제2호에</u> <u>해당될 때에는 표창을</u> <u>취소하며, 제3호</u> ---- ----- ----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생략)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④ <u>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u>

<신 설>

위 임 장

귀일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받을 것을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사실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55 25 9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유치사

1. 위협할것 사람의 선전물(구인동원물,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작하여 합니다.
2. 원형(사건)인입과 사실내용, 외국인(동료)사실내용, 국가(소속)인 사실내용, 납세현황, 지명제 납세징청 등 X에 대해서는 위협하는 사람과 위협할것 사람의 선전물 사본을 구워서(서로) 제출하여 합니다.
3. 다른 사람이 인강 모음 등 위위로 위협할것을 약속하여 인강할것을 권유하는 「협박」 제212조와 제212조의 다른 사본에 유죄 - 협박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 × 297m (복합지 809㎡)

위 임 :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이명, 표정, 언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구

유익사

1. 위첨발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지 않습니다.
2. 인접사상(음접차사상증, 외접인물차사상증, 국내거소신고 사상증명, 입세증명, 지명세 입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첨발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하여 복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신상 또는 외모를 복로 하여 위첨발증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12조 제200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책 크기 90g/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표창을 취소하며, 제3호에”로 하고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적 조 서

(1) 성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소													
(6) 직업					(7) 소속								
(8) 직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의회의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속					(15) 직위								
(17) 직급					(18)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	--

--	--

--	--

--	--

--	--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회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 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u>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 는 표창을 받은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 ----- <u>다 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표창을 취소하 며, 제3호에 ----- -----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 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u>